

계 약 요 령

제정 1972. 6. 1령제 18호
개정 2014. 6. 9령제51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회계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장의 규정에 의한 계약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외자구매 및 외국인과의 계약과 수탁용역계약을 제외한 시제, 제작, 공사, 구매, 용역(연구, 일반, 수리, 정비유지보수) 등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에서 행하는 모든 계약에 관하여 적용한다.(개정 2005.2.15; 2009.2.1)

제3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2.15)

1. “계약담당원”이라 함은 규정 제21조의 재무책임원을 말한다.
2. “계약자”라 함은 연구소와 계약을 체결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시제계약”이라 함은 연구개발사업 중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방산물자(제조활동 및 용역활동을 포함한다) 또는 시제생산(용역활동을 포함한다)을 위촉한 자와의 계약을 말한다.(개정 2007.12.3; 2009.2.1)
4. “제작계약”이라 함은 별도의 주문사양에 의하여 제작절차를 거치는 것으로서 제3호 이외의 제조(연구개발시제품시험용역 및 용역활동을 포함한다)에 대한 계약을 말한다.(개정 2009.2.1)
5. “공사계약”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 등을 말하며 건설공사는 다음 각 경우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일반공사 : 토목, 건축, 토목건축, 산업설비, 조경공사
 - 나. 전문공사 : 실내건축, 미장·방수, 철강재설치, 삭도설치, 준설공사 등
6. “구매계약”이라 함은 이미 제조된 완성품을 구입하는 것으로서 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상용물품 계약을 말한다.
7. “연구용역 계약”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활동 및 이에 준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으로서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연구기관으로 위촉된 자와의 연구과제에 대한 계약을 포함한다.(개정 2007.12.3; 2009.2.1)
8. “일반용역 계약”이라 함은 연구용역 이외의 그 밖의 용역 계약으로서 다음 각 경우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4.2.10)
 - 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 및 감리용역
 - 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용역
 - 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용역
 - 라. 측량법에 의한 측량용역
 - 마. 시설관리용역 및 청소용역
 - 바. 그 밖의 용역(연구, 수리, 정비유지용역 이외의 용역) 등(개정 2014.2.10)
9. “수리용역 계약”이라 함은 법인세법에 의한 해당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수선비를 지출하는 계약을 말한다.(개정 2014.2.10)

10. “정비유지보수용역계약”(이하 ‘유지보수계약’이라한다)이라 함은 연구소자산 및 물품의 물질적 손상을 가능한 회피하기 위한 예방정비 활동과 수선을 포함하여 일정기간 동안 정상상태로 유지시켜 주기 위한 계약을 말한다.(개정 2009.2.1)

제4조(계약방법)

- ① 계약은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에 의한다.
- ② 계약담당원은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용역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한 경우나 그 밖에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필요시에는 동시에 실시한다)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규격입찰 및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하여야 한다.(신설 2000. 5.29; 개정 2014.2.10)
- ③ 계약담당원은 제1항에서 정하는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의 특수성, 긴급성,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연구소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00. 5.29; 개정 2014.2.10)

제4조의 2(공동계약)

- ① 계약담당원은 공사, 제조, 그 밖의 계약에 있어서 이를 경쟁계약으로 하고자 할 때는 계약자를 2인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과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을 입찰공고 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 6.29; 2014.2.10)
- ② 공동계약은 계약자 모두가 계약서에 연명으로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원은 계약체결 시 공동계약 대표자로부터 계약자 상호간에 체결한 공동계약 표준 협정서를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87.11.25)

제5조(계약서의 작성)(조명칭변경 2007.12.3)

- ① 규정 제32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원 명의로 하여야 한다.
- ② 계약은 계약당사자 쌍방의 날인으로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정부가 지정하는 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공인인증기관 전자인증서에 의한 전자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경우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07.12.3; 개정 2009.2.1)

제6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 ① 규정 제3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할 때(개정 1994. 6.29; 1995. 8. 1; 2000. 5.29)
 - 2. 전기, 가스, 수도 및 정기간행물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할 때
- ②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계약은 제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원가계산을 생략(신규개발 및 특수규격품 등 제외)하고 해당계약 요구예산 이하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서 등을 제출받아 이를 기초로 계약금액을 정할 수 있다.(신설 2012.4.12)

제7조(계약보증금 등)(조 명칭변경 2007.12.3)

- ① 규정 제38조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공사계약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거나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으로 하여야 하며, 낙찰자 또는 계약자로 하여금 계약체결과 동시에 현

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하 '국계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5. 8.1; 단서삭제 1997. 5.30; 개정1998. 6.11; 2000. 5.29; 2005.2.15; 2009.2.1)

1~8(삭제 2009.2.1).

② 규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국계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개정 1997. 5.30; 2000. 5.29; 2009.2.1)

1~6 (삭제 2009.2.1)

③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수회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할 때에는 매회별 계약이행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장기계약에 있어서는 총 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공사, 용역계약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이상 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서제출)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1; 1997. 5. 30; 2000. 5.29, 2005.2.15, 2009.2.1)

④ 계약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연구소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에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하게 하여 연구소에 귀속시켜야 한다.

⑤ 계약담당원은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자가 본조와 제10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본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이하 "보증보험증권"이라 한다)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05.2.15, 개정 2009.2.1)

1. 피보증인의 명의를 당 연구소일 것
2. 보증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 이상일 것
3. 보증기간은 보증금에 따라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할 것(각목개정 2007.12.3)

가. 입찰보증금

- 1)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 2)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나. 계약보증금

- 1)보증기간의 초일: 계약기간 개시일
- 2)보증기간의 만료일 :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일 것

다. 하자보수보증금

- 1)보증기간의 초일 :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
- 2)보증기간의 만료일 :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 이후일 것

4. 보증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입찰자 또는 계약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하는 것일 것

제8조(계약보증기간의 연장)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가 계약보증금을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이와 유사한 증서 등으로 납부한 경우에 계약의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담당원은 계약자로 하여금 그 보증기간을 연장토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10.4)

제9조(연대보증인)

①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담당원은 계약자로 하여금 해당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의 2배 이상을 납부하거나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 6.29; 1995. 8. 1; 1997. 5.30)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해당공사를 이행할 수 있는 자격과 재력이 있어야 하며, 연구소 또는 정부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이 만료된 자이어야 한다.(개정 1985. 7. 1; 2000. 5.29)

③ 계약담당원은 계약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에게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원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때에는 계약금액 중 연대보증인의 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대보증인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 시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으로 된 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자에게 연대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신설 1985. 7. 1)

제10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담당원은 공사의 도급업자로 하여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에 해당하는 하자보증금을 계약금액의 최종 지불 시까지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그 납부방법에 관하여는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4. 6.29)

제11조(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검사)

① 계약담당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정부공사에 준하여 해당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5. 8. 1; 1997. 5.30, 개정 2005.2.15) 다만 철거공사, 해체공사, 단순암반 철취공사 등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공사와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 제외)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단서신설 1986.10. 1; 개정 1995. 8. 1; 2005. 2.15)

② 공사담당부서의 장은 전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행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따로 검사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9.2.1)

④ 공사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검사를 행하는 때에는 해당공사에 대한 하자관리장부를 비치,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검사를 종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계약담당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공사명
2. 계약금액
3. 계약자
4. 준공년월일
5. 하자담보책임기간
6. 하자발생내용 및 그 밖의 참고사항(개정 2014.2.10.)

⑤ 계약담당원은 하자검사결과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4. 6.29; 1995. 8. 1; 2000. 5.29)

제12조(계약 및 하자보수보증금의 귀속)

① 계약담당원은 계약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계약에 특히 정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보증금을 연구소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받은 때 또는 제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확약문서를 받은 때에는 그 증권 또는 보증서나 확약문서에 의한 보증금액을 현금

으로 납입케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연구소 귀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7.11.25)

제13조(지체상금)

① 계약담당원은 계약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공사의 경우에는 계약금의 1000분의 1, 운송·보관의 경우에는 계약금의 1000분의 5, 물품의 제조·구매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0분의 1.5, 물품의 수리·용역·그 밖의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의 지체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단,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개정 1991. 4. 1; 2005.2.15; 2007.12.3.; 2014.2.10)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징수함에 있어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다만, 기납부분 또는 기성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 물품 또는 용역 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개정 2000. 5.29; 2005.2.15)

③ 계약담당원은 계약서에 특히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개정 2014.2.10)

2. 연구소 측 사정으로 지연된 일수

3. 연구소 측 사정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지연된 일수(개정 2005.2.15)

4. 검사지연으로 인한 일수, 다만, 검사요청의 제출이 지연된 일수, 재검사로 지연된 일수, 대체납품으로 지연된 일수는 제외한다.

5. 대체납품 또는 재 시공지시로 인한 지체일수에 계약 기간 전 조기납품 또는 준공된 일수에 해당하는 일수

6. 그 밖의 지연사유가 외국정부의 수출허가 승인 지연 등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수출허가 승인지연의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09.2.1.; 2014.2.10)

④ 계약자가 계약자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행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 계약담당원은 해당 지체상금을 징수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제 계약 및 연구용역 계약의 경우 기술 및 자료수집관계 등 연구소에서 그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그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5.2.15)

⑤ 계약담당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신설 2005.2.15)

1. 납품기한(준공기한)내에 제1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한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준공기한)이후에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준공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⑥ 계약담당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자에게 지급될 대가 또는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신설 2005.2.15.; 개정 2014.2.10)

⑦ 계약담당원은 개산계약(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을 포함한다)의 계약이행 중 발생한 해당 지체상금은 최종 정산확정 후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5.2.15)

제14조(대체납품지시)

① 계약담당원은 계약한 물품이 검사결과 불합격되었을 경우 대체납품이 필요한 때에는 계약자에게 대체납품을 지시하여야 한다. 다만, 감가조건부로 납품을 하게 할 경우 또는 순수시작품으로서 그 하자를 문제삼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체납품지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감가부분은 그에 상당한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상계하여야 한다.

제14조의 2(납품)(신설 2005.2.15)

① 계약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일에 해당하는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계약서에 정한 장소로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되는 물품을 수령하기까지 연구소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자는 계약서에 분할납품기일을 정한 경우이거나 연구소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5조(계약금의 지급)

① 계약금액은 계약이 이행되어 검사가 완료된 후 계약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4. 8.24; 2007.12.3; 2010.2.9)

②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그 경과된 기간은 이를 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5. 8. 1)

③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이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반송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규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의 특례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미리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⑤ 규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급금은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5.2.15)

1. 삭 제(2005.2.15)
2. 삭 제(2005.2.15)
3. 삭 제(1998.12.30)

⑥ 제1항의 규정은 규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다.(신설 2007.12.3)

제15조의 2(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 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이하 “대금지급지연일수”라 한다) 해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금융기관 대출 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 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 5항에 의한 대가지급의 경우 및 연구소의 예산사정이 있거나 해당계약에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7.11.25; 2005.2.15; 2007.12.3; 2009.2.1)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6조 제2항 단서의 경우와 제52조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자가 사후정산에 필요한 회계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

후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은 전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2.15)

제15조의 3(채권확보)

- ① 제15조 제5항에 의하여 선급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선급금 지급액과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계약이행이 확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는 반납사유의 발생 시 반납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개정 2009.2.1)
- ② 채권확보 시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급금 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이후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1997. 5.30; 개정 2000.5.29; 2005.2.15; 2009.2.1)

제16조(계약이행의 검사)

- ① 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검사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4.2.10)
- ② 규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계약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와 시제개발 등에 대한 기술검사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③ 전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자의 계약이행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전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제17조(검사조서의 작성 생략) 규정 제34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한다.

1.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개정 1994. 6.29; 1995. 8. 1; 2000. 5.29)
2. 전기, 가스, 수도 및 정기간행물의 공급계약 등 그 성질상 검사조서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계약
3. 매각계약(신설 1991. 4. 1)

제2장 일반경쟁계약

제18조(일반경쟁계약)

- ① 계약담당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삭제 2000. 5.29>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은 자일 것.
 4.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일 것.(신설

1991. 4. 1)

② 계약담당원은 국가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격자에게 제25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각각 통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삭제(1995. 8. 1)

제19조(제한경쟁계약) 계약담당원이 입찰참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국제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1987.11.25; 2009.2.1)

1.~6호(삭제 2009.2.1)

②~④(삭제 2009.2.1)

제20조(자격요건의 증명)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8조 제1항 각 호의 사실을 관계관 서에서 발행한 문서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21조(입찰참가자격 등록)

① 계약담당원은 입찰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격서류의 제출로서 등록하게 할 수 있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2.10.4)

1. 입찰참가 신청서(별표 제2호 서식)

2. 자격증명서

3. 인감증명서

4. 그 밖의 공고로서 요구한 서류(개정 2014.2.10)

② 삭제(개정 2012.10.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뜻을 명시하여 일간지 또는 정부가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 장치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2.1)

④ 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 신청마감까지 제1항에서 정하는 자격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⑤ 각 중앙관서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 정부가 지정 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에 게재된 업체의 등록사항은 연구소에서 공고한 전자입찰에 참여할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신설 2005.2.15 ; 개정 2009.2.1)

제22조(입찰참가자격 서류확인)

① 계약담당원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제19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의 사실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한 결과 자격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내용을 이를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조항제목개정 2005.2.15)

계약담당원은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정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사실이 있는 후 지체 없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개정 1994. 6.29; 1995. 8. 1.)

1. ~14. 삭제 (1995. 8. 1)

제24조(입찰공고)

①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제18조 제2항, 제19조 제1항 제5호 및 제19조 제3

항,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입찰서 제출마감일(우편입찰도 할 수 있을 때)의 전일로부터 기산하여 7일전(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및 재공고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개정 1995.8.1; 1997.5.30; 2005.2.15; 2007.12.3)

② 삭 제(1995. 8. 1)

③ 삭 제(2005.2.15)

제25조(입찰공고의 내용)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열거하여야 한다.

1. 입찰경쟁에 붙이는 사항(공동도급입찰의 경우에는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및 제4조 제2항 및 제3항에 관한 사항)(개정 2000. 5.29)
2.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3. 입찰유의서 및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일시 및 장소
4. 입찰등록 및 입찰의 일시 및 장소
5.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 및 장소와 연구소 귀속에 관한 사항
6. 낙찰자 결정방법(제38조 2항 본문에 의한 적격심사 낙찰제의 경우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및 낙찰자 통보예정일 포함)(개정 2000. 5.29)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8.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와 참가자격(공사입찰의 경우에 한한다.)
9. 우편입찰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10. 입찰참가 신청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4.2.10)

② 제1항 1호에 의하여 제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함을 명시한 경우에는 입찰 전에 평가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0. 5.29)

제26조(입찰보증금의 납부, 대체 및 환불)

① 규정 제38조 제1항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총입찰 예정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86.10. 1; 1997. 5.30)

②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면제에 관하여는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2005.2.15; 2010.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신청자가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별표 제3호 서식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서에 의거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규정 제38조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을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제4호 서식의 보증금 대체납부서에 의거 대체하여야 한다.

⑤ 규정 제38조 제2항에 의한 입찰보증금 반환은 별표 제5호 서식의 보증금환불청구서에 의거 환불하여야 한다.

⑥ 1회계년도 내의 모든 입찰에 대한 일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보증금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회계년도 초에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7.11.25; 2000. 5.29)

제27조(예정가격의 비치)

① 계약담당원은 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5.2.15)

② 전항의 예정가격조서는 그 예정가격이 경쟁입찰에 붙일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별

표 제6호의 서식, 단가에 대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7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③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45조(수의계약) 제4호 제5호에 의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정부가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 또는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0. 5.29; 단서신설 2000.5.29; 개정 2009.2.1)

제28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 예정가격은 다음에 열거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법령에 의하여 통제된 경우에는 그 통제가격
2. 전호에 의한 예정가격이 곤란한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3. 제1호 및 전호의 규정에 의하여도 예정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정가격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 계약담당원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수급현황, 계약조건 그 밖의 제반 여건을 참작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미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예정가격의 기초금액을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개정 1987.11.25.; 2014.2.10)

제29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국제법 시행령 제64조에서 정한 기준과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방식에 따라 해당 사업의 예산 범위내에서 조정한다.(개정 1991.4.1; 2005.2.15; 2007.12.3; 2009.2.1)

1~2(삭제 2009.2.1)

②~④(삭제 2009.2.1)

제29조의 2(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제법과 시행규칙 제74조의 2에 따라 해당 사업의 예산범위내에서 조정한다.(개정 2009.2.1)

②~④(삭제 2009.2.1)

제29조의 3(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계약담당원은 공사·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9조 및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개정 1987.11.25; 1997. 5.30; 2014.2.10)

제30조(입찰자 열람사항의 비치)

① 계약담당원은 입찰에 있어서의 일반 및 특수계약조건과 입찰유의서, 설계도면, 규격서, 시방서 등 필요한 서류를 지정한 장소에 비치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원은 계약의 일반 및 특수조건과 입찰유의서를 열람하고 이를 승낙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시켜야 한다.

③ 제1항의 계약조건, 입찰유의서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1조(입찰참가등록)

① 계약담당원이 경쟁입찰에 불이고자 할 때에는 해당 입찰 전에 입찰참가신청자가 별표 제8호 서식에 의한 입찰등록부에 등록하게 하고, 별표 제9호 서식의 입찰참가등록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참가신청필증을 교부하지 않아도 입찰사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전일로 하여야 한다.

제32조(현장설명)

- ① 공사를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에 현장 설명을 실시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현장설명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1997. 5.30)
- ② 전항의 현장설명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해당 입찰서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및 재공고입찰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원은 현장설명을 실시한 경우 현장설명참가자로 하여금 별표 제10호의 현장설명 청취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87.11.25; 1997. 5.30; 1998. 6.11; 2005. 2.15)
 -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는 7일 이상(개정 1995.8.1; 07.12.3)
 -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이상(개정 1995.8.1; 1997.5.30; 2000.5.29; 2007.12.3)
 -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33일 이상(개정 1994. 6.29; 1995. 8. 1; 1997. 5.30; 2000. 5.29)
 - 4. 삭제(1995. 8. 1)
- ③ 계약담당원은 공사를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설계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및 동 물량에 대한 단가산출에 필요한 세부설명서 및 그 밖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비치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 6.29; 1995. 8. 1; 1997. 5.30; 2000. 5.29; 2014.2.10)
- ④ 계약담당원은 공사의 성질상 현장답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에 참고되는 사항)에 의한 설명만으로 현장설명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85. 7. 1)
- ⑤~⑦ 삭제(1995. 8. 1)
- ⑧ 계약담당원은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1997. 5.30; 개정 2000. 5.29; 2005. 2.15; 2009.2.1)

제33조(입찰방법)

- ①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경쟁입찰에 붙일 가격의 총액에 대한 입찰인 경우에는 별표 제 11호 서식, 단가에 대한 입찰인 경우에는 별표 제12호 서식의 입찰서를 계약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별표 제11호 개정 2005.2.15)
- ② 대리인으로서 입찰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전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계약담당원이 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④ 입찰서는 1인 1통이어야 한다.
- ⑤ 공사입찰 시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공사에 있어서는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4. 6.29; 1995. 8. 1; 2000.5.29; 2009.2.1)
- ⑥ 50억원 미만인 공사와 50억원 이상으로써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하여금 착공 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4. 6.29; 1995. 8. 1; 2000. 5.29))

제34조(입찰의 효력)

- ①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한다.(신설 2005.2.15)
- ② 입찰자는 일단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개정 2005.2.15)

제35조(입찰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소정일 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가 소정의 일시까지 소정의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5.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설명을 실시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자중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신설 1994. 6.29; 개정 1995. 8. 1.; 2000. 5.29; 2009.2.1)
6. 제3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 상 금액과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입찰(신설 1994. 6. 29)
7. 제1호 내지 제6호 이외에 연구소에서 정한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개정 1994. 6.29)
8.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규정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신설 2005. 2. 15)

제36조(입찰무효의 이유표시) 계약담당원이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여부를 확인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개찰에 참가한 입찰자의 면전에서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하며 또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개정 2005. 2. 15)

제37조(개찰)

- ① 개찰은 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의 면전에서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자로서 출석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연구소 직원으로 하여금 개찰에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5.2.15)
- ②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개찰 및 낙찰을 선언한다.(신설 2005.2.15)

제38조(낙찰)

- ① 계약담당원은 접수된 입찰서를 개봉하여 별표 제13호 서식의 입찰비교표를 작성하고, 예정가격조서와 비교,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언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연구소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지 아니하고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09.2.1; 단서 개정 2009.6.23)
 1. (삭제 1997. 5.30)
 2. (삭제 1997. 5.30)
 3. 추정가격이 정부가 정한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및 제4조 제2항에 의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신설 2009.6.23)
 4. 추정가격이 정부가 정한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시설공사관련 용역 제외)은 예정가격의 88% 이상(연구소 시설의 관리 및 유지를 위한 용역, 청소용역, 인력 지원용역, 그 밖의 인적용역계약의 경우에는 90%)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09.6.23.; 2014.2.10)
 5. 임차, 리스, 보험 등 연구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09.6.23)

- ③ 연구소에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최고가격의 유효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여야 한다.
- ④ 낙찰이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즉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⑤ 전항의 규정에 의한 추첨 시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 없는 연구소직원으로서 하여금 대리추첨케 할 수 있다.
- ⑥ 계약담당원은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입찰장소에서 회수의 제한 없이 재입찰에 붙일 수 있다.
-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는 정부가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계약담당원은 공사, 또는 물품, 연구개발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법에 규정된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격여부를 심사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00. 5.29)
- ⑧ 계약담당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와 시제업체 선정 평가 그리고 제4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계약의 기술평가 시 허위로 원가자료를 제출하여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대하여는 감점제도를 도입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05.2.15)
- ⑨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자의 허위 원가자료 제출여부는 연구소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외부감사의 감사처분결과에 따르며 감점제도 적용기한은 해당 사실이 있는 후 1년으로 한다.(신설 2005.2.15)

제39조(토목공사의 낙찰자 결정)

- ① 삭 제 (1995. 8. 1)
- ② 삭 제 (1991. 4. 1)

제40조(재입찰공고)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재입찰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개정 1997. 5.30)

제41조(차액보증금)

- ① 삭 제 (1995. 8. 1)
- ② 삭 제 (1994. 6.29)
- ③ ~ ④ 삭 제 (1995. 8. 1)

제3장 지명경쟁계약

제42조(지명경쟁에 의한 경우) 계약담당원은 다음에 열거한 경우에 있어서는 지명경쟁에 붙일 수 있다.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물품 또는 풍부한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계약자가 10인 이내인 때
2. 추정가격이 3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제조를 하게 하거나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 또는 매입할 때(개정 1994. 6.29; 1995. 8. 1; 1998. 6.11; 2005.2.15; 2009.2.1)
3.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할 때(개정 1994. 6.29; 1995. 8. 1; 2009.2.1;

2014.2.10)

4.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광공업 규격표시 물품 또는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하여 인증을 받았거나 등급이 사정된 물품을 제조, 구매할 때(신설 1991. 4. 1; 개정 1995. 8. 1)

5.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수시공업자 또는 우수용역업자로 지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신설 1991. 4. 1; 개정 1995. 8. 1)

6.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을 때(신설 1991. 4. 1)

제43조(입찰자의 지명)

① 계약담당원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한다.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한다.(개정 2005.2.15)

② 계약담당원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할 자를 지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입찰에 참가할 의사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참가할 것을 승낙한 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된 자로 하여금 입찰에 참가하게 될 때에는 늦어도 입찰전 5일까지 별표 제14호 서식에 의한 지명 통지를 하여야 한다.(별표 개정 2005.2.25)

제44조(일반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8조 내지 제23조 및 제26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은 지명경쟁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장 수 의 계 약

제45조(수의계약에 의할 경우)(개정 2014.2.10)

①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시설물의 관리,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방위사업청장이 군용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 또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로부터 군용 규격물자(중점관리대상업체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품목에 한정한다)를 제조·구매하는 경우

라.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

산업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신기술(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내로 한정한다)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바.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사.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아.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 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자.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

차.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카.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

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가.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나.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다.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써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

나. 재외공관이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다. 물품을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할 때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마.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바.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② 계약담당원은 제1항제3호 각 목의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 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 해당 물품을 인증 또는 지정한 날부터 3년(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이 유효한 기간

만 해당한다) 동안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주무부장관이 인증기간 또는 지정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인증기간 또는 지정기간과 연장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짧은 기간 동안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원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
2. 수의계약의 대상물품의 직접생산여부

제45조의 2(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신설 2009. 2.1)

①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 2억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 이하인 공사와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그 밖의 계약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함) 등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제25조에 정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및 단서 신설2010.2.9.; 개정 2014.2.10)

1. 전문적인 학술용역(신설 2010.2.9)
2. 기존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경우로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 사실상 유지·보수가 곤란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신설 2010.2.9)
3.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나라장터에 의한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신설 2010.2.9)
- ②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 2의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조달청 관련 적격심사기준 상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 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한다.
- ③ 제1항의 경쟁입찰 대상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 ④ 제1항의 경우 계약담당원은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견적서 제출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0.2.9)
- ⑤ 소액계약이라도 제1항 내지 4항에서 정한 절차와 다르게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요령이 정한 수의 또는 경쟁입찰 등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신설 2010.2.9)

제46조(재공고 입찰과 수의계약)

- ①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붙여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거나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결과 입찰자가 1인 뿐인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 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붙일 때에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개정 1998. 6.11; 2014.2.10)
- ② 전항의 규정은 재지명입찰에 붙일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③ 제1항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소에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입찰한 순위에 의하여 계약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7조(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수의계약)

- ①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약할 때에는 그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 한도 내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다만,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경쟁을 붙일 때 정한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② 삭 제 (1994. 6.29)

제48조(분할수의계약) 제45조 제8호, 제46조, 제47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가격 또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수인에게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9조(견적서의 제출) 제45조 4호·5호의 경우로 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5조 1호·제13호·제14호,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경우 또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개정 1991. 4. 1; 1995. 8. 1; 1997. 5.30; 2000. 5.29; 2005.2.15; 2009.2.1)

제5장 계약의 특례

제50조(장기계약)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09.2.1)

1. 방위사업법에 의한 방산물자를 계속적으로 조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연구개발 또는 시제생산을 할 때(개정 2007.12.3)
2. 임차, 운송, 보관, 시험, 측량, 조사, 연구시설 관리 등의 용역계약의 경우
3.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설계서 등에 의하여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계약의 경우, 이 경우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동일 구조물 공사는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을 확정된 후 장기 계속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1987.11.25)
4.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계약의 경우
5. 업무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
6. 장비의 유지보수계약(신설 1994. 6.29)

제51조(단가계약) 일정기간 계속하여 제조, 가공, 수리, 공급, 매매,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2조(개산계약)

- ① 개발시제품의 제조, 시험, 조사, 연구용역계약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의 위탁 또는 대행계약에 있어서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정산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05.2.15)

제5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개정 2005.2.15)

- ①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원가비목 중 일부비목 또는 일부품목의 원가확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시제계약의 경우에는 특정비목불확정계약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05.2.15)
- ② 전항의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정산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05.2.15; 2009.2.1)

제53조의 2(소액물품·소액용역 구매계약의 특례)(개정 2014.2.10)

- ① 소장이 별도로 정하는 일정 금액이하의 소액물품·소액용역에 대하여는 각 부서의 물품운용원이 직접 구매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운용원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소액물품·소액용역은 연구/일반 소모성 물품(도서 포함) 및 용역을 말한다. 소액물품·소액용역 구매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06.1.1; 2007.12.3)
 - 1. 소내문구점 구매
 - 2. 전자상거래에 의한 구매
 - 3. 소액용역에 의한 구매
- ③ 소액물품·소액용역의 구매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신설 2001.10.11; 개정 2007.12.3)

제6장 보 칙

제54조(보칙) 이 요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의 성질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등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5조(계약심의위원회)

- ① 소장은 필요에 따라 계약사무에 관한 제반문제를 심의케 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4.2.10)

제56조(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 계약담당원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취득된 관련정보를 계약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05.2.15)

부 칙

이 요령은 1982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요령은 2014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삭제 1998. 6.11)

입찰참가신청서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20 . . .
입찰건명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소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소의 입찰유의서, 입찰특수조항 및 귀소의 지시사항을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 첨부자료 : 1.
2.
3.
4.
5.
6.
7.

입찰참가신청자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표자성명 :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국방과학연구소 귀하

입찰보증금납부서

입찰번호	제호	개찰일시	20 . . .
계약건명			
금액	<u>금 원정</u> (₩)		
보증금내역			
<p>납부자</p> <p>주소 :</p> <p>상호 또는 명칭 :</p> <p>대표자 성명 :</p> <p>생년월일 :</p> <p>전화번호 :</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20 . . .</p>			
국방과학연구소 주임출납원 (인)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 대체납부서

입찰번호	제 호	개찰일시	20 . . .
계약건명			
입찰보증금	금 원정 (₩)		
계약보증금	금 원정 (₩)		
보증금내역			
<p>납부자</p> <p>주 소 :</p> <p>상호 또는 명칭 :</p> <p>대표자 성명 :</p> <p>생년월일 :</p> <p>전화번호 :</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을 계약보증금으로 대체 납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20 . . .</p>			
<p>국방과학연구소</p> <p>주 임 출 납 원 (인)</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_____ 귀하</p>			

<u>계약(입찰, 차액, 하자보수) 보증금환불청구 및 영수서</u>			
계약(공고)번호		계약(입찰)일자	20 년 월 일
계약(입찰)번호			
보 증 금 액	일금	원정 (₩)
보 증 금 내 역			
<p style="text-align: center;">상기 계약(입찰, 차액,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납부하였던 보증금의 환불을 청구하여 정히 영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20 년 월 일</p> <p style="margin-top: 20px;">주 소 :</p> <p style="margin-left: 20px;">상 호 :</p> <p style="margin-left: 20px;">대 표 자 :</p> <p style="margin-left: 20px;">생 년 월 일 :</p> <p style="margin-left: 20px;">성 명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30px;">국방과학연구소장 귀하</p>			

예 정 가 격 조 서 ()

금 액

금

원정 (₩)

계 약 건 명

상기 계약의 예정가격을 상기 금액으로 정함

20 년 월 일

국 방 과 학 연 구 소
재 무 책 임 원

(인)

예 정 가 격 조 서

계약건명 :

일련번호	품 명	규격 또는 명세	단 위	수 량	예정가격 (단 가)	총 액

(별지에 계속)

위와 같이 예정가격을 결정함.

20 년 월 일

국 방 과 학 연 구 소
재 무 책 임 원

(인)

입찰 참가 신청 필증

입찰 공고 번호	제 호	입찰 일자	
입찰 건 명			
입찰 참가 신청자	상호 또는 명칭		
	주 소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귀하의 금번 위의 번호로 공고한 당소의 일반(제한)경쟁입찰에 참가신청을 마친 자임을 증명함.

20 년 월 일

국 방 과 학 연 구 소
재 무 책 임 원

(인)

귀하

<u>입찰서</u>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찰년월일	
입찰건명				
입찰금액	금	원정 (₩)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p>귀소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소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 조건, 설계서(물품규격서), 시방서, 사양서, 현장설명사항 및 귀소의 지시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지정된 기한 내에 계약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p> <p>첨 부 :</p> <p style="margin-left: 200px;">20 년 월 일</p> <p>입찰자 주 소 :</p> <p style="margin-left: 40px;">상호 또는 주소 :</p> <p style="margin-left: 40px;">대표자성명 : (인)</p> <p style="margin-left: 40px;">생년월일 :</p> <p style="margin-left: 40px;">전화번호 :</p> <p style="margin-left: 150px;">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귀하</p>				

입찰서

입찰공고번호 : 제 호

입찰건명 :

일련번호	품명 및 규격	단위	수량	입찰금액(단가)	총액

(별지에 계속)

귀소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소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현장설명 사항 및 귀소의 지시에 따라 위의 금액으로 지정된 기일내에 계약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생 년 월 일 :
성 명 :

①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귀하

경쟁 입찰 참가 통지서

입찰 참가자	상호 또는 명칭					
	주 소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입찰건명					
입찰 내용	현장	일시	입찰	일시		
	설명	장소		장소		
	입찰등록 마감일시		입찰보증금 납부일시			
	서류제출처		전화번호			

당 연구소에서 집행하는 위 입찰에 귀사를 입찰참가자격자로 선정 통지하오니 소정의 절차를 마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①

귀하